

# < 2018년 한국관광공사 신입사원 모집 >

**한국관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모십니다.**

## 1. 모집분야

○ 채용인원

구분	채용예정인원	채용형태
한국관광진흥직	33명	· 5급 정직원 · 소정의 수습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수습 해제

## 2. 지원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사예정일(2018.12.10)부터 교육입소 및 근무 가능한 자
- 기준점수 이상의 외국어 점수를 보유한 자

·영어 : 토익(800점), 토플(650점), New 토플(355점), iBT 토플(91점) 이상(택1)
·일어 : JPT(800), JLPT(N1) 이상(택1)
·중어 : 新 HSK 5등급, 6등급 각 180점 이상(택1)
·노어 : FLEX 600점, TORFL(2등급) 이상(택1)
·베트남·마인어 : 영어 지원자격과 동일

※ 입사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 시험 성적에 한함. 단,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2년이 지나도 인정.

## 3.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서류전형	NCS 직무능력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지원자격 미달, 오류사항 기재, 불성실 기재 등 심사	관광학	·40문제, 30%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역사, 관광상식 등	직무면접	·70% ·실무지식 및 공사 인재상, 핵심역량 등	·최종면접 - 인성, 공사 인재상 및 핵심역량 등
	선택과목	·40문제, 70% ·경제/경영 중 택1 *4년제 대학학력 수준			
부적격자 제외 합격자 결정	4배수		2배수		최종선발

※ 각 단계별로 전 단계까지의 성적과 관계없이 평가하는 허들 방식 적용

#### 4.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서류접수	2018.10.1(월)~10.15(월) 17시까지	인터넷 접수
NCS 직무능력검사	2018.10.27(토)	서울
1차 면접	2018.11.12(월)	서울
2차 면접	2018.11.18(일)	원주
최종 합격자 입사	2018.12.10(월)	원주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합격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채용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

※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증명사진 및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 5. 제출서류

○ (공통) 입사지원서 : 인터넷 접수

-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출신학교 및 특정 단체가 유추가능한 e-mail 사용 금지
- ▶ 직·간접적으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 최종 제출 후 지원서 수정 불가

○ (최종면접합격자) 최종면접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의 서류 제출

제출서류	내용
외국어 성적표 사본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어학사항과 다른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자격(면허)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한국관광공사 인턴 수료 증명 사본	· '16~'18년 수료자에 한함 · 단, 지원자격으로서의 외국어 점수 보유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포함 제출
장애인 증명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한국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 (발급기간 : '17.10.15~'18.10.15)

-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출기한 내에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사지원서 내용과 상이  
또는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이 불가합니다.
-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합니다.

## 6. 우대사항

구분	대상	우대내용
전 단계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단계별로 법정가산율(만점의 10% 또는 5%) 적용
지원자격	사회형평적 채용 (장애인, 고졸인재)	· 외국어 점수 기준 완화 - 영 : 토익(600), 텡스(460), New 텡스(246) iBT 토플(70) 이상 - 일 : JPT(600), JLPT(N2) 이상 - 중 : 新 HSK 4급 210점 이상 - 노 : FLEX 540, TORFL(1등급) 이상 - 베트남·마인 : 영어 점수 기준과 동일 * 청각장애(2·3급) 응시자 적용기준 TOEIC, JPT 독해성적×200%, TEPS 독해성적×167%
서류전형	한국관광공사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면제 (한국관광공사 청년인턴 수료자는 '16~'18년에 한함)
NCS 직무능력 평가	관광 전공자	· 만점의 1% 가산(4년제) - 2년제는 0.5% 가산 - 재학생 제외, 졸업예정자 인정 · 학과, 학부명에 "관광, 호텔, 컨벤션, Hotel, Hospitality, Tourism, Convention, Leisure" 등이 명시된 학과만 인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보유자	· 만점의 1% 가산(1급) - 2급 보유자는 0.5% 가산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가산

- ※ 단계별 우대사항 중 가장 유리한 한가지만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7. 본사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안내

- 적용대상 : 한국관광공사 이전지역(강원)인재
  - \* 강원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대학원 이상 제외)
- 적용단계 : 모든 전형단계
- 적용방법 : 이전지역(강원)인재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 비율이 '18%'에 미달할 경우 전형별 하한선 이내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전형	하한선
NCS직무능력검사	최저 커트라인의 '합격선 -3점'
면접전형(1, 2차)	면접전형 과락기준(70점) 이상

## 8.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 시 사진, 성별, 생년월일, 출신학교 및 학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추가 입력
  - \* 직무 관련 교육사항 기재 시 수료 과정명 및 학점 입력 가능
- e-mail 기재 시 특정 학교,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는 금지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발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단계에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어점수, 지역인재 여부 등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9. 기타

- (지원서) 접수는 채용 사이트(<http://kto.care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에 한합니다.('18.10.15(월) 17:00 마감)
- (지원서) 접수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일 및 마감시간에 임박한 접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시간 연장 없음)
- (지원서)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입사지원한 내용의 수정과 입사지원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기재 등)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 등 손해에 대한 모

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분확인)**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복지카드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가 불가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기재 및 채용비리)** 자료검증 및 사실확인을 통해 지원서 허위작성(증빙서류 미제출, 입력사항과 제출자료 불일치 포함) 또는 증빙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등 채용비리가 발견되면 불합격 및 입사취소 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지원을 제한하며 입사 이후에도 관련사항 적발 시 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불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자필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 처리)**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최종 면접 합격자의 신체검사, 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 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시 통보)
- **(이의신청 센터)** 채용 관련 비리·부정행위 및 소명 등을 위한 채용 이의신청 센터를 운영합니다.
  -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사이트의 FAQ 및 Q&A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에 미 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한국관광공사 사장

채용분야	한국 관광 진흥직	분 류 체 계	대분류	01.사업관리	02.경영·회계·사무			
			중분류	01.사업관리	01.기획사무			
			소분류	01.프로젝트관리	01.경영기획	03.마케팅		
			세분류	02.프로젝트관리	01.경영기획	03.통계조사	01.마케팅전략기획	
주요사업	○ 한국관광공사는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만들어 나가는 국민기업”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국내 및 지방관광 활성화,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능력단위	○ 국내·외 관광마케팅 (세분류 마케팅전략기획의 7개 능력단위 모두 해당) ○ 관광수용태세 개선 (미개발) ○ 경영관리 (세분류 경영기획 9개 능력단위 모두 해당)							
직무수행내용	○ <b>(관광마케팅)</b> 외래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고 한국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및 소재개발, 마케팅 콘텐츠 생성 및 공유,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b>(관광수용태세 개선)</b>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숙박·음식·쇼핑·교통 여건 개선, 지자체 대상 관광개발 컨설팅, 관광벤처 창업지원, 관광인력 대상 교육훈련 실시, 관광 관련 기초 조사사업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b>(경영관리)</b>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기획, 회계 및 예산관리, 법무지원, 인적자원 관리, 총무, 정보시스템 관리,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필요지식	○ 마케팅 관련 지식, 상품기획 관련 지식, MICE 기획 관련 지식, 브랜드관리 관련 지식, 예산수립 및 운영 관련 지식, 인적자원 관리 관련 지식, 회계관련 지식							
필요기술	○ 외국어 활용능력, 시장·환경분석 기술, 마케팅 보고서 작성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구축 능력,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스프레드시트 활용능력, 계정과목 분류 능력, 재무분석 정보의 작성 및 보고 기술							
직무수행태도	○ 고객지향적인 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인 태도, 외부에 대한 협업적인 태도, 기획 마인드, 분석적인 태도, 세밀한 일처리, 윤리의식 등							
필요자격	○ 기준점수 이상의 외국어 성적							
직업기초능력	○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a href="http://www.ncs.go.kr">www.ncs.go.kr</a> 홈페이지→NCS·학습모듈 검색							

**인사규정 제12조 채용결격**

제12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예) 건국대 충주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등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가. 이전지역(강원)학교**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강원도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강원도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나. 이전지역(강원)인재**

강원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강원도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 ㉠ 『고등교육법』상의 강원도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강원도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강원도 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㉑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강원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㉒ 강원도 지역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1.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천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타인의 요구사항 파악 내용, 실천 당시의 어려웠던 점과 해결방안,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서술). (300~700자)
2. 지원자의 메시지 전달능력, 타인 메시지 이해능력을 활용하여 상호간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300~700자)
3. 지금까지의 경험 중 2인 이상이 모여 공동 작업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속에서 지원자의 역할과 협력과정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700자)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드시 지켜가고자 했던 도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지켜가고자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700자)
5.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아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700자)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 붙임6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 지원자 정보는 누락없이 모두 기재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e-메일 또는 우편 제출
- \* 원본서류에 한해 반환가능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연락처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